

EU 산림전용 방지법 설명회



목 차

1. EUDR 주요 내용 및 동향
2. EUDR 대비를 위한 필요 정보
3. EUDR 국가 벤치마킹
4. EUDR 관련 용어 정리 및 FAQ

EUDR 주요내용 및 동향

- ◆ EUDR의 목적은 유럽 및 전 세계적으로 “산림전용이 없는 (deforestation-free)” 시장을 조성하는 것임.
- ◆ EUDR 대상 품목은 소고기, 대두, 팜유, 코코아, 커피, 고무, 목재 및 목재제품 등이 포함됨. 관련 상품 및 관련 제품은 다음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EU시장에 배치되거나 제공되거나 수출 될 수 없음
 - 산림전용(deforestation) 및 황폐화(degradation)가 없어야 함
 - 생산국의 관련 법률을 준수하여 생산하여야 함
 - 실사 진술서에 따라 합법성이 보장 되어야 함
- ◆ **산림전용 및 황폐화**가 없는 제품은 다음과 같음
 - 제품이 2021년 1월 1일 이후에 산림전용 이루어지지 않은 토지에서 생산된 제품이거나 이러한 상품을 사용하여 사육되거나 만들어졌다는 것을 의미함.
 - 제품이 목재를 포함하거나 목재로 만들어진 경우 2021년 1월 1일 이후에 산림 황폐화를 유발하지 않은 상태의 숲에서 수확된 목재를 의미함.

- ◆ **생산국의 관련 법률을 준수하여 생산된 제품**은 EU 시장에 출시되거나 공급되는 제품이 '생산국의 관련 법률을 준수하여 생산되어야 한다'는 것임 (제3조 (b)). 합법성의 정의는 입법 과정에서 크게 확장되었으며 다음과 같음
 - 생산지의 법적 상태와 관련된 법률
 - 토지 이용 권리
 - 환경보호
 - 목재 수확과 직접 관련된 산림 관리 및 생물 다양성 보전 규정
 - 제3자 권리
 - 노동권
 - 국제법에 따른 인권 보호
 - 사전 정보에 입각한 동의 원칙, 유엔 원주민 권리 선언에 명시된 내용 포함
 - 세금, 반부패, 무역 및 관세 규정

<EUTR 과 EUDR비교>

내용	EUTR	EUDR
적용 범위 및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불법 벌채 및 관련 거래 방지가 목표 적용대상은 EU내에서 거래되는 모든 목재 및 목재제품 EU시장에 도입되는 목재 및 목재제품은 합법적으로 벌채된 것임을 보장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림전용 및 황폐화를 방지하고 공급망의 투명성과 추적성을 높여 지속 가능한 조달을 촉진하는 것이 목표 적용대상은 소고기, 대두, 팜유, 코코아, 커피, 고무, 목재 및 목재제품 2021년 1월1일 이후 산림전용이 없는 토지에서 생산된 상품을 포함하거나 사용해야 하며, 목재는 숲에서 황폐화를 유발하지 않는 상태에서 수확된 것이어야 함.
실사 및 준수 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목재 및 목재제품의 합법성을 보장하기 위해 실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함 사업자는 공급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위험 평가 및 완화 조치를 수행해야 함 사업자는 목재 제품을 판매한 사람과 다음 구매자에 대한 정보 보관 의무만을 가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든 관련 상품에 대해 산림전용 및 황폐화 위험을 평가하고 관리하는 실사 시스템을 수행해야 함. 사업자는 공급망의 투명성을 유지하고, 지리적 위치와 정확한 기록을 유지하며, 위험식별 및 완화 조치를 보고해야 함. 국가 또는 지역을 세 가지 범주로 나누고 저위험 국가의 경우 간소화된 실사기준 적용
적용 시기 및 집행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3년 3월3일 발효 각 EU회원국의 지정된 당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3년 6월29일 채택, 2024년 12월 적용 예정 집행 당국을 임명할 예정이며, 이 기관은 EUTR 집행기관과 동일하지 않을 수 있음
적용 품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목재 및 목재제품 - 4401, 4403, 4406, 4407, 4408, 4409,4410, 4411, 4412, 4413, 4414, 4415, 4416, 4418, 대나무 제품 및 재활용 제품을 제외한 펄프 및 종이(47,48), 9403, 9406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고기, 대두, 팜유, 코코아, 커피, 고무 목재 및 목재제품 - 4401, 4402, 4403, 4404, 4405, 4406, 4407, 4408, 4409,4410, 4411, 4412, 4413, 4414, 4415, 4416, 4417, 4418, 4419, 4420, 4421, 47,48,49, 9401, 94030/40/50/60/91, 940610

<EUTR 과 EUDR비교(계속)>

내용	EUTR	EUDR
준수방안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실사 시스템 구축 2. 합법성 증명 3. 기록유지 4. 내부 감사 및 교육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실사 시스템 구축 2. 지리적 위치 정보 제공 3. 기록유지 및 보고 4. 내부 감사 및 교육
규제제외 대상	재활용제품 인쇄된 종이(도서, 잡지, 신문 등) 포장용지(다른 제품을 포장하여 보호 또는 운반을 위해 사용되는 포장재) 일부 대나무와 등나무 제품 사적 사용을 위해 개인이 구매하거나 판매한 목재	재활용제품 폐기물 및 스크랩 인쇄된 종이(도서, 잡지, 신문 등) 포장용지(다른 제품을 포장하여 보호 또는 운반을 위해 사용되는 포장재) 특수용도 목재 사적 사용을 위해 개인이 구매하거나 판매한 목재

- ◆ EUDR은 EUTR의 기본 규정을 준수하지만 적용 품목이 확대되고, 산림전용 및 황폐화 방지에 대한 규정, 실사에서 위치추적 정보 요구 등 적용 범위와 이행 요건이 강화되었음. 이에 따라 기업은 더 많은 준비와 대응이 필요함을 시사함.

◆ 적용 시기 연장

- 2024년 10월, 집행위원회는 EUDR 시행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여러 글로벌 파트너들의 요청에 따라 단계적 시행기간을 12개월 더 연장할 것을 제안
- 집행위원회는 기간 연장과 함께 EUDR을 준비하는 이해관계자, 회원국 및 제 3국을 지원하기 위한 추가 지침 문서와 국제 협력 프레임워크를 발표
- 향후 제안이 승인될 경우 대기업의 경우 2025년 12월 30일, 이외 기업의 경우 2026년 6월 30일에 법률이 적용됨.

* 대기업 기준 - ①대차대조표 총액 2천만 유로 초과 ② 순 매출액 4천만 유로 초과 ③ 평균 직원수 250인 초과 중 2개 이상을 충족할 경우 대기업으로 분류

◆ 국가 벤치마킹 분류 기준

- 국가를 저위험, 표준, 고위험으로 분류하는 EUDR 벤치마킹 작업에 적용될 방법론의 원칙을 발표함.

◆ EUDR 관련 정보 시스템 구축

- 사업자가 실사보고서(DDS)를 등록하는 정보 시스템은 11월 초 구축 후, 12월부터 운영될 예정임.
- 사업자는 EUDR이 시행되기 전 실사보고서(DDS) 등록 가능
- 10월 중 EUDR 이해관계자들을 위한 시스템 이용 관련 온라인 교육 진행 예정

◆ 집행위원회의 관련국과의 협력 노력

- 집행위원회는 EUDR 관련국과의 대화를 강화하고, 국가 벤치마킹 시스템의 신속한 완성을 위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임.

◆ EUDR 기업의무 - '실사'의무

- EU역내에 상업적 목적으로 목재를 도입하는 사업자((Operator)와 비 중소기업 거래자(Trader))에 적용되며, EU 내에서 생산 유통되는 제품의 가치사슬 과정에 대하여 산림전용 및 황폐화의 위험을 평가하고 관리하는 프로세스를 의미
- * 운영자(Operator) - 가공, 판매, 수출 등의 상업적 활동을 위해 관련 제품을 역내 시장에 수입, 수출 출시하는 모든 자연인·법인 (역외 생산된 제품을 수입할 경우 역내 등록된 사무소, 지사, 영구 사업장이 있는 수입업자가 운영자로 간주)
- ** 거래자(Trader) - 위 운영자의 상업활동을 위해 제품 출시 이후 관련 제품을 역내 시장에 유통하는 공급망에 속한 모든 자연인·법인
- 이는 잠재적 위험을 사전에 식별하고, 완화 조치를 구현하며, 이러한 노력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보고하는 것을 포함
- 이러한 행위자들은 공급망을 통해 소재가 어떻게 이동했는지, 식별된 위험 및 완화 조치에 대한 데이터를 제공해야 함.
- EUDR 규제 품목의 출시를 위해 실사를 거친 후 그 결과를 담은 '실사보고서(DDS)'를 정보시스템 및 관할 기관에 제출해야 함.

◆ EUDR의 실사 절차

- 사업자는 상품이 산림전용과 관련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실사 시스템을 구축해야함.
- 실사 시스템은 상품의 생산지부터 최종 소비자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추적할 수 있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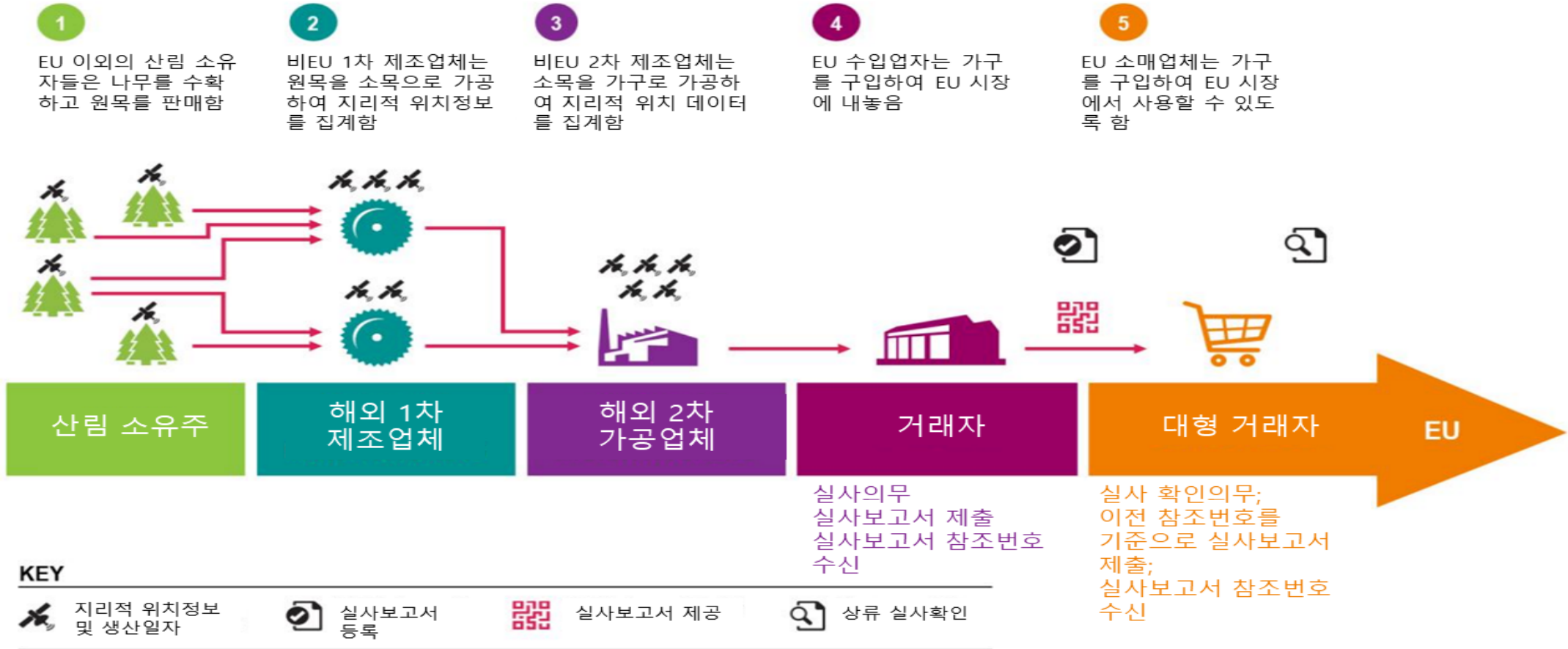
①정보수집: 제품에 대한 설명, 수량, 원산지(지리적 위치 데이터 포함), 공급자 세부 정보, 제품 생산과정이 산림전용 및 황폐화와 무관하다는 증거 수집·제공

②위험평가: 제품과 관련된 미준수 위험 정도를 평가함.

③위험완화: 위험이 없거나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낮은 위험이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없는 경우 추가 정보 수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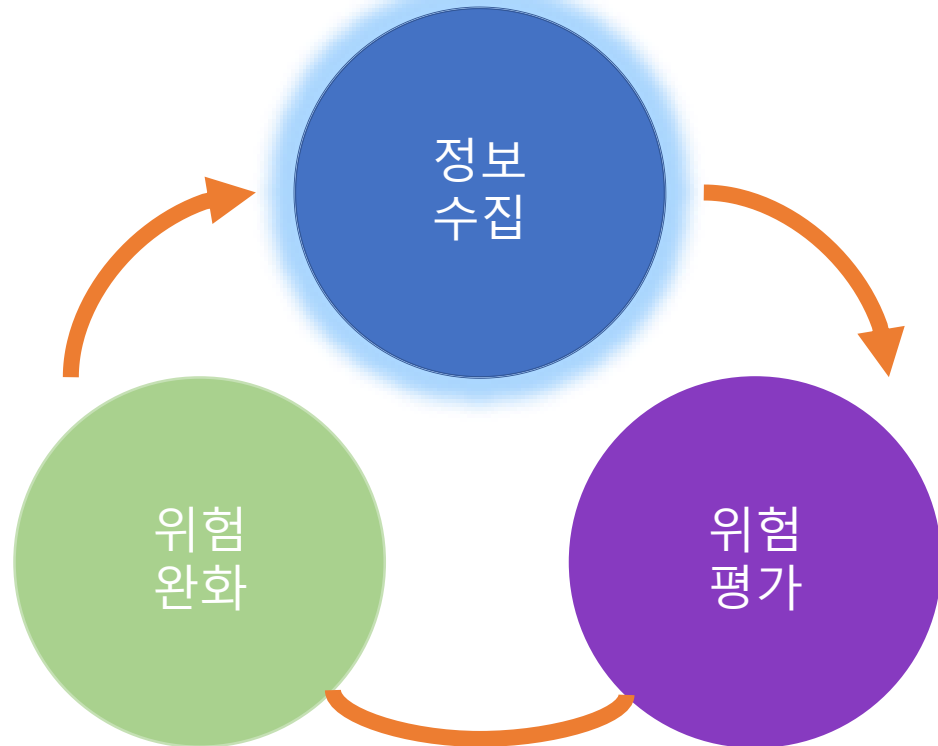
EUDR대비를 위한 필요 정보

<EUDR 실사절차>



출처: 『EU DEFORESTATION REGULATION STEP-BY-STEP GUIDE FOR BUSINESS』, 세계자연기금(WWF).

<EUDR 실사절차>



- ◆ EUDR의 실사는 세가지 기본요소의 실행을 요구
- ◆ 역외 공급업체(supplier)인 우리 기업의 직접적 의무는 정보수집과 관련됨
- ◆ 우리 기업과 거래하는 EU의 업체들은 실사보고서(DDS)에 포함된 모든 항목과 관련된 정보를 우리 기업에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

- ◆ 정보 수집단계를 위해 필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사업자가 우리 기업에 요구 할 수 있는 부분임.
- ◆ 사업자가 아닐경우 정보제공은 의무가 아니지만 규제 품목을 역내 수출하는 경우 바이어 등에 의해 요청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공급망에 대한 사전 점검 및 관련자료 수집 필요

1) 상품 관련 정보

- 기업의 정보(상호, 주소, EORI 번호)
- 제품의 HS 코드를 포함한 상품명과 수량
- 수종: **제품의 학명**, 지리적 분포가 선언된 원산지와 일치하는 지 등을 검토.(유용한 사이트 <https://www.woodrisk.org>) .
CITES 규제 여부와 위험 종 목록을 통해 불법 거래 위험 여부 체크. (유용한 사이트 https://tools.bgci.org/global_tree_search.php)
- 제품의 원자재 원산지 국가 및 **지리 정보**
- (기존 제출된 실사 선언서를 참조하는 경우) 해당 실사 진술서의 참조 번호
- 실사 선서
- 서명

2) 원주민의 권리와 관련된 정보

- EUDR은 기업들이 " 생산국 또는 그 일부에 원주민이 존재하는지, " " 생산국 또는 그 일부에서 원주민들과 신의에 따른 협의 및 협력이 이루어졌는지, " " 관련 상품을 생산하는 데 사용된 지역의 사용 또는 소유에 대해 원주민들이 객관적이고 검증 가능한 정보에 근거해 정당한 주장을 제기했는지를 평가할 것을 요구". [Article 10.2 (c,d,e)].
- EU의 바이어들은 공급자에게 이 증거를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우리 업체들은 이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
- 원주민의 협의 및 협력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
 - 국가 법령 및 규정 검토
 - 사전정보에 근거한 동의(FPIC)확보 증빙: FSC 또는 PEFC 인증을 받은 기업은 FPIC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함. 이러한 인증이 있다면 해당 기업이 원주민들과의 협의를 통해 FPIC를 확보했음을 증명하는 문서나 인증서를 확인할 수 있음
 - FSC등 인증 기관의 외부 감사 보고서를 통해 FPIC 요구 사항 준수여부 검증 가능
 - 원자재 공급 업체나 제조 업체에게 원주민과의 협력에 관한 증거(회의록, 공식서류, 협약서) 요청
 - 유엔 원주민 권리선언(UNDRIP)를 준수하는지 검토 할 수 있으며 협의 절차 증명 서류로 증빙

- 원주민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 원주민 부재를 공식적으로 확인: 원주민이 없는 국가에서는 해당 지역에 원주민이 없다는 공식적인 보고서나 정부 자료를 수집하여 제출할 수 있음.
 - 관련 법적 문서 제공: 원주민이 없는 경우라도, 해당 지역의 토지 사용 및 소유권에 관한 법률과 규정을 준수했음을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해야 함. 여기에는 정부 기관이나 법적 권한을 가진 기관이 발급한 토지 소유권 문서나 관련 규정 준수 증명서가 포함될 수 있음

** EUDR에서 원주민이란 국제법 유엔 원주민 권리 선언(UNDRIP)**에서 정의된 집단을 의미함. 이들은 특정한 땅, 영토 또는 자원과 역사적, 문화적 연결을 유지하고 있으며, 종종 현대 국가의 성립 이전부터 그 지역에 정착하여 살아온 공동체들임. 이들은 고유한 언어, 문화, 전통 및 자치 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조상으로부터 이어진 땅과 관련된 특별한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 한국은 UNDRIP에 따른 원주민 집단은 없으며 EUDR에서 원주민과 관련된 요구사항이 직접적으로 적용되지 않음. 집성촌 등 독특한 공동체 문화가 존재하지만 국제법적 기준으로 원주민은 아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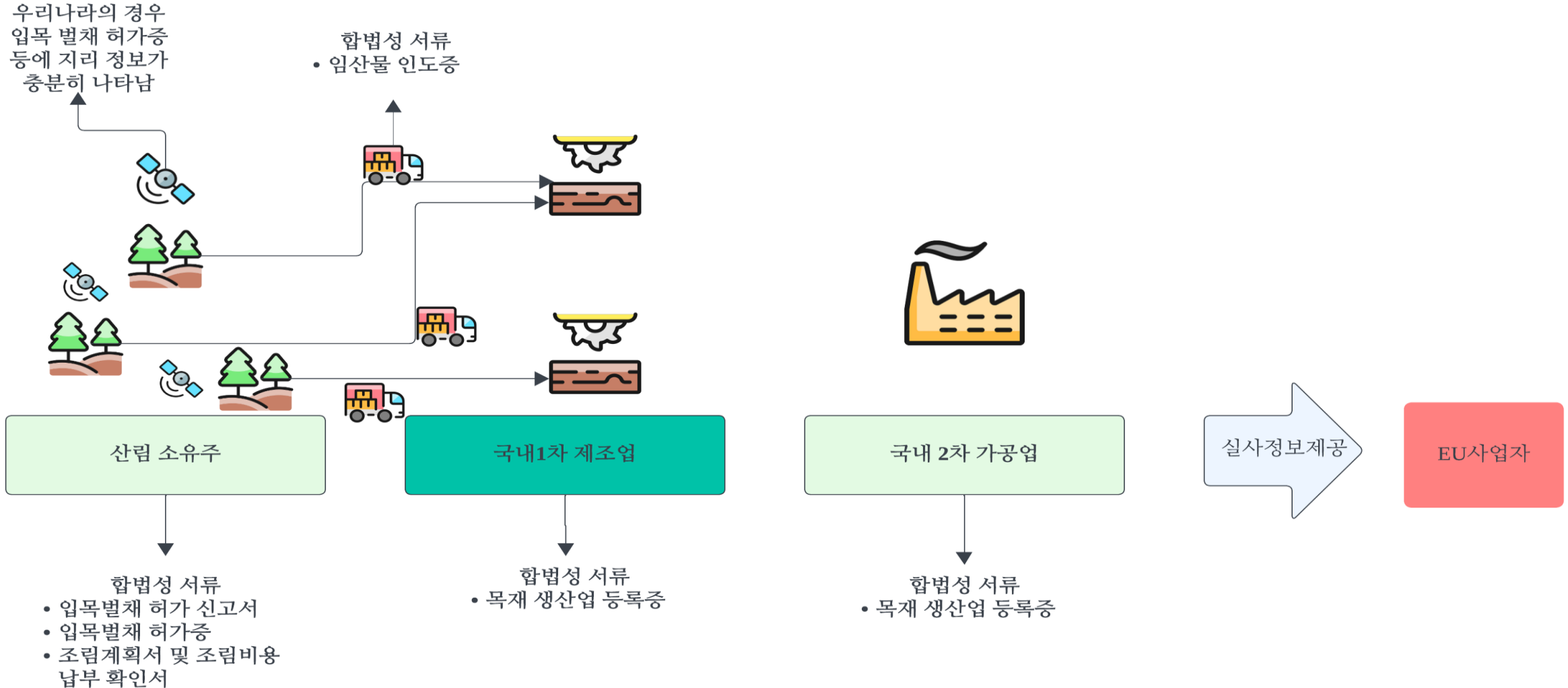
3) 합법적 벌채와 관련된 서류

- 해당 목재가 생산국의 관련 법률에 따라 생산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충분히 결정적이고 검증 가능한 정보"를 수집할 것을 요구함. 일반적으로 EU 시장에 출시될 각 제품 출하에 대한 공급망 문서를 수집함.
 - 벌채, 가공, 운송, 유통, 수출 등 공급망 전체에 걸친 합법성과 추적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제품 생산지(예: 플랜테이션)에서 EU시장에 도달하기까지의 모든 공급망의 합법성을 문서화 할 수 있는 자료
 - 각 나라는 벌채 부터 운송 및 수출에 대해 서로 다른 법적 요구사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 합법적 입증 문서도 다양함
- FSC인증서 등 공인받은 인증서의 경우 이전까지는 단일 서류로 합법성을 입증해주는 추세였으나 EUDR의 경우 향후 추이를 지켜보는 것이 필요함
 - FSC 등은 EUDR에 규합하도록 인증시스템을 개선하고 있으며, 이 새로운 인증시스템이 향후 EUDR에서 어떠한 공신력을 갖을지 등의 추이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

4) 산림전용/황폐화 확인을 위한 지리 위치정보

- 제품의 원산지가 확인되고 생산국이 EC(유럽위원회) 벤치마킹에 따라 표준 또는 고위험으로 분류된 경우, 원산지 지역, 공급 지역, 또는 플롯의 지리적 위치에서 2021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산림 전용 또는 황폐화의 징후를 확인하기 위해 지리 위치정보를 제공하여야 함.
- 제공해야할 위치 정보: 4ha 미만일 경우 위도와 경도 좌표를 사용하여 설명된 토지의 지리적 위치(최소 소수 6자리 이상), **4ha 이상의 토지의 경우 다각형을 사용하여 토지 경계를 설명해야 함(제2조 (28)).**
 - 지리적 위치 좌표를 수집하는 방법은 스마트폰, 휴대용 위성항법시스템(GNSS), GIS, 그 외 무료로 이용 할 수 있는 디지털 어플리케이션 활용 가능
- **EUDR이 역외 공급자에게 요구하는 기본 정보는 지리 좌표이며, 이는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 데 필수적인 요소. 이의 정확성에 대한 책임은 역외 공급자가 아닌 EU의 사업자에 있음.**
- 제품에 여러 지역에서 생산된 원료·중간재 등이 포함된 경우 모든 지역에 대한 지리적 위치 정보 제공 필요
- 국산 목재를 이용한 목재제품은 위치 정보 제공에 대한 큰 문제가 없으나 제3국에서 원료를 수입하여 가공할 경우 주의가 필요. EU의 바이어가 상황에 따라 좌표 뿐 아니라 위성 지도 등을 요구할 가능성에도 대비 할 필요.

EUDR 역외 공급자의 의무: 국산 목재 사용의 경우



EUDR 역외 공급자의 의무: 국산 목재 사용의 경우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5호서식] <개정 2018. 12. 27.>

(일록)

[] 입목벌채 허가증
 [] 임산물 굴취·채취 허가증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산림소재지					
구역면적		㎡	벌채 또는 굴취·채취 면적		㎡
허가내용	종류	방법	용도	허가수량	잔존면적· 본수·군상수
				수종 수량(㎡,본,kg)	
허가기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제2항, 제45조제2항 또는 제46조의2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

직인

유의사항

1. 위 허가에 따라 허가대상 임목을 벌채한 경우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라 벌채지에 조림을 해야 합니다.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8조제4항을 위반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 없이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임목벌채등을 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74조제2항제2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3. 수집된 임목 부산물을 보관할 경우에는 주변의 사람이나 시설 등에 위해를 일으키지 않도록 안전하게 적치·보관하고, 특히 임지 내에 보관할 경우에는 토사유출 방지 및 산림작업의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정리·보관해야 합니다.
4. 수집된 임목 부산물이 보관장소나 사용장소 외에 방치된 경우에는 폐기물에 해당하여 폐기물관리법령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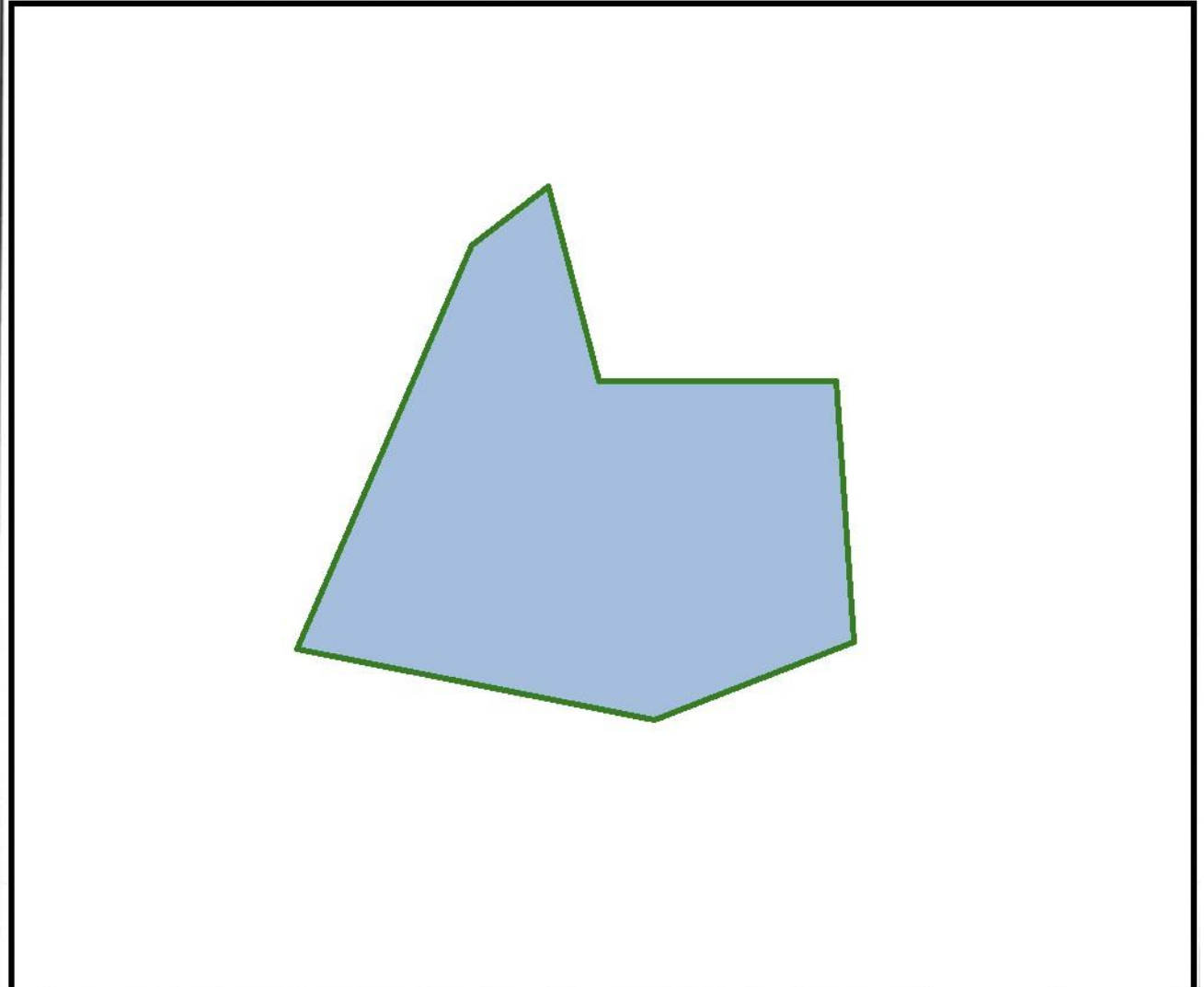
작성방법

1. "허가수량"란에는 벌채의 경우에는 부피(㎥)와 본수량, 굴취·채취의 경우에는 본수 또는 무게(kg)를 적습니다.
2. "잔존면적·본수·군상수"란에는 모수작업의 경우에는 모수본수량, 친환경 벌채의 경우에는 잔존면적과 군상수를 적습니다.

벌채구역도

소재지 :

Scale :



사업계획서

1. 산림소재지 :

2. 벌채대상면적 :

3. 입목벌채목적

4. 사업기간

5. 임산물 활용계획

6. 조림계획

견본

■ 산림사업비의 보조와 관련한 서류 고시 [별지 서식]

조림비용납부확약서

대상지	산림소재지					산림면적(㎡)	허가신고면적(㎡)
	시·도	군·구	읍·면	동·리	지번		

확약자	주소				성명	생년월일
	시·도	군·구	읍·면	길		

상기 임야에 입목벌채 허가신청(변경)·신고에 따른 조림비용 10%에 대하여는 귀 시·군에서 발부하는 고지서에 의하여 정하는 기한 내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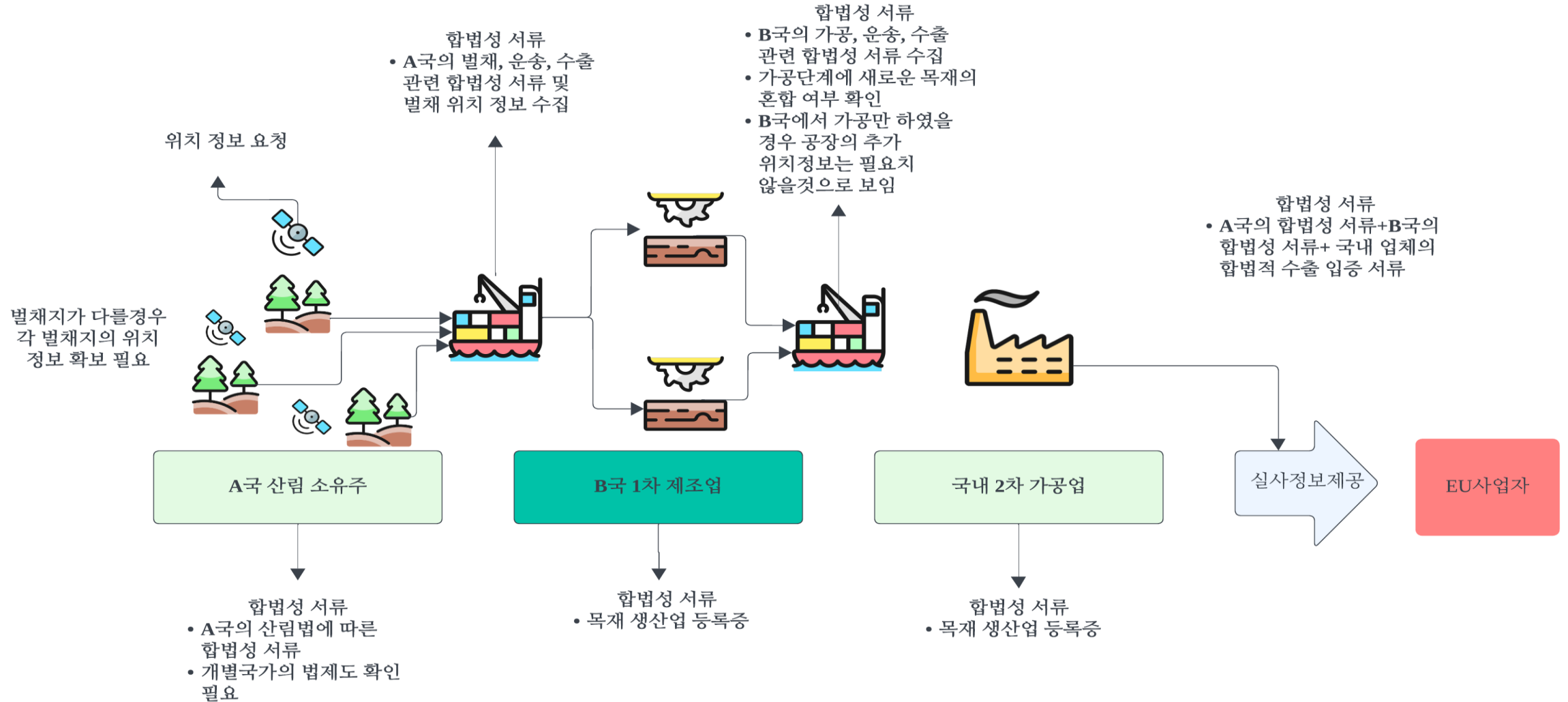
확약자

(서명 또는 인)

OO시장·군수구청장

귀하

EUDR 역외 공급자의 의무: 해외 목재 사용 및 국내 가공 사례



EUDR 국가 벤치마킹

- ◆ 집행위원회가 운영하는 국가 벤치마킹은 국가 또는 그 일부를 산림전용 및 황폐화가 없는 상품을 생산할 위험 수준에 따라 세 가지 범주(고위험, 표준 위험, 저위험)로 분류함.
- ◆ 국가 또는 그 일부의 위험 상태 식별 기준은 규정의 제29조에 정의됨
 - 제29조 (2)항은 규정의 주요 의무가 발효되는 시점으로부터 18개월 이내에 집행위원회가 시스템을 개발하고 국가 또는 그 일부의 목록을 발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최신 과학적 증거, 국제적으로 인정된 출처, 현장에서 검증된 정보를 고려한 객관적이고 투명한 평가 분석을 기반으로 할 예정임.
 - 벤치마킹 방법론은 현재 집행위원회에 의해 개발 중이며, 다중 이해관계자 산림전용 플랫폼 및 기타 관련 회의에서 발표될 예정임.
- ◆ 제29조 (5)항에 따라, 집행위원회는 고위험으로 분류되거나 분류될 위험이 있는 모든 국가와 논의하여 그들의 위험 수준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해야함. 이를 통해 파트너 국가들이 추가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최종 분류가 완료되기 전에 EU와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임.

EUDR 용어 정리 및 FAQ

- ◆ '산림전용(deforestation)' 은 '인위적인 개입을 막론하고 산림이 농업 용도로 전환된 것'으로 정의됨 (제2조 (3)).
 - FAO에서는 '인위적인 개입을 막론하고 산림이 다른 토지 용도로 전환된 것'으로서 “벌채 및 목재수확으로 나무가 사라진 지역’과 ‘자연적으로 또는 조림 등 조치로 산림이 재생될 예정인 지역’은 산림전용에서 제외됨
- ◆ '산림황폐화(forest degradation)'는 '산림피복의 구조적인 변화로서 그 형태가 전환된 것'으로서 '원시림(primary forests) 또는 천연갱신림(naturally regenerating forests) 이 산업조림지(plantation forests) 또는 기타임야(other wooded land)로 전환'되거나, '원시림이 인공림(planted forests)으로 전환된 것' (제2조 (7)).
 - FAO에는 산림 황폐화에 대한 표준 정의는 없고 개별국 정의에 의함

◆ 산림(forest)

- 0.5ha를 초과하는 토지로서, 수고 5m 및 수관 율폐도 10%를 초과하거나, 천연 상태로 이러한 최저기준을 만족할 가능성이 있는 입목으로 구성된 토지. 농업 및 도시적인 활용이 지배적으로 이루어지는 토지는 제외

◆ 기타 임야(other wooded land)

- ‘산림’으로 분류되지 않는 0.5ha를 초과하는 토지로서, 수고 5m를 초과하는 입목으로 구성되고 수관 율폐도가 5~10% 수준이거나, 천연 상태로 이러한 최저기준을 만족할 가능성이 있는 입목으로 구성되어 있거나, 입목과 관목, 덩굴이 피복의 10%를 초과하여 혼합된 토지. 농업 및 도시적인 활용이 지배적으로 이루어지는 토지는 제외

◆ 원시림(primary forest)

- 자생수종으로 천연갱신이 이루어진 산림으로, 인간의 활동에 대한 가시적인 흔적이 없고 생태학적 과정에 두드러진 교란이 없는 산림

◆ 천연갱신림(naturally regenerating forest)

- 천연갱신으로 형성된 입목의 구성이 지배적인 산림으로서
 - A. 인공조림 혹은 천연갱신의 구별이 불가능한 산림이거나
 - B. 천연갱신된 자생수종과 식재 또는 파종된 입목이 혼효된 산림으로 천연갱신된 입목이 성숙단계에서 임목축적의 대부분을 차지하거나
 - C. 본래 천연갱신으로 형성된 입목에서 유래한 왜림이거나,
 - D. 천연 갱신된 외래종의 입목으로 구성된 경우

◆ 산업조림지(plantation forest)

- 집약적 관리가 이루어지는 인공림으로, 조림 및 성숙단계에서 1~2개 수종으로 구성, 동령림, 일정한 식재 간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목재, 섬유와 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한 단벌기 조림지가 포함, 생태계 보호 및 복원 목적의 조림지나 천연갱신림으로 유도하기 위한 조림 및 파종이 이루어진 산림은 제외

◆ 인공림(planted forest)

- 식재 또는 파종으로 형성된 임목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산림으로, 식재 또는 파종에 의한 임목이 성숙단계에서 임목 총적의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어야 하며, 본래 식재나 파종으로 형성된 임목에서 유래한 왜림을 포함

◆ 농업적 용도(agricultural use)

- 농업적 용도란 기업 농장림과 축산용지 및 휴경농지를 포함한 농업 목적의 토지 사용을 의미

◆ 기업 농장림/농업용 플랜테이션(agricultural plantations)

- 과수/팜유 플랜테이션, 올리브 과수원 및 관목 아래에서 작물이 자라는 혼농임업 체계 등 농업 생산 체계 내의 임목으로 구성되는 토지로서, 목재를 제외한 모든 관련 상품에 대한 플랜테이션을 포함
- 기업농장림은 '산림'의 정의에서 제외

◆ 모든 상품(수입, 수출, 거래)이 추적 가능해야 하는가?

- 추적성 요구 사항은 수입, 수출, 거래되는 모든 관련 상품에 적용됨.
- 규정에 따라 사업자는 관련 상품을 EU 시장에 제공하기 전에 해당 상품을 생산지로 추적해야 하며, 따라서 지리적 위치 정보를 포함한 정밀 조사 성명서 제출이 필수 조건임.

◆ 모든 경우에 다각형으로 지리적 위치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가?

- 4헥타르(만) 미만의 토지의 경우 지리적 위치는 위도와 경도 지점 하나로만 설명할 수 있음.

◆ 디지털 형식의 다각형은 어떻게 선언해야 하는가?

- 정보 시스템 작동에 대한 세부 규칙은 시행 법안에서 정해질 예정임. 현재 GeoJSON 파일 형식과 WGS-84 좌표계를 지원하며, 향후 피드백을 기반으로 시스템이 개선될 예정임.

◆ 혼합된 제품의 생산지는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가?

- 혼합된 제품의 경우, 저장된 모든 제품의 생산지를 선언해야 하며, 출처를 알 수 없는 제품이 포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

◆ 지리적 위치 정보를 통해 실제로 산림전용과 무관하다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 지리적 위치 정보는 사업자가 상품이 생산된 토지에서 산림전용이 없었다는 주장을 확인하는 데 사용할 수 있음. 지리적 위치 정보는 위성 이미지나 산림 지도와 비교하여 상품이 산림전용 방지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할 수 있음.

◆ 여러 국가에서 온 상품의 추적성은 어떻게 작동하는가?

- 사업자는 복잡한 공급망을 통해 여러 국가에서 온 상품의 추적성을 보장해야 함. 예를 들어, 여러 국가에서 수집된 생산물은 생산된 모든 토지의 지리적 정보를 포함한 정밀 조사 성명서와 연결되어야 함.

◆ 규정에 포함된 제품은 무엇인가?

- 이 규정은 부속서 I에 나열된 제품에만 적용됨. 부속서 I에 포함되지 않은 제품은 규정의 요구 사항을 따를 필요가 없음. 예를 들어, 비누는 팜유를 포함하더라도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님.

◆ 포장재로 사용된 목재에 이 규정이 어떻게 적용되는가?

- 포장재가 독립적인 제품으로 EU 시장에 제공되거나 수출되는 경우, 이는 규정의 적용을 받으며 정밀 조사 요구 사항이 적용됨. 그러나 포장재가 다른 제품을 지원, 보호 또는 운반하기 위한 용도로만 사용된다면, 이는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음.

◆ 재활용된 종이/판지가 규정의 범위에 포함되는가?

- 대부분의 재활용 종이 및 판지 제품은 일정 비율의 버진 펄프 또는 재활용되지 않은 원료를 포함할 수 있음. 규정에 따르면, 수명이 다하고 폐기물로 분류될 수 있는 제품만이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음.

- ◆ 운영자, Operator는 누구인가?
 - 운영자, Operator는 규정 제 2조 15항에 따라 관련 제품을 EU 시장에 처음으로 공급(수입 포함)하거나 수출하는 개인 또는 법인을 의미함.
- ◆ 거래자, Trader는 누구인가?
 - 거래자, Trader는 규정 제 2조 15항에 따라 관련 제품을 EU시장에 재판매하는 개인 또는 법인을 의미
- ◆ 사업자(운영자와 비 중소기업 거래자) 모두 EUDR 지침을 준수하여야 함
- ◆ 공급망 하위의 중소기업 사업자의 의무는 무엇인가?
 - 공급망 하류에 있는 사업자는 부속서 I에 나열된 제품을 부속서 I에 나열된 다른 제품으로 변형하거나, 이미 정밀 조사를 받은 부속서 I에 나열된 제품을 수출하는 경우에 해당함.
 - 실사 대상이 된 제품의 일부에 대해서는 a) 이미 실사 대상이 된 제품 일부에 대해 실사를 실시하거나, b) 정보 시스템에 실사보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음. 하지만 국가 책임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공급망의 이전 단계에서 입수한 실사보고서의 참조 번호를 제공해야함.

- ◆ 비-EU 기반 사업자가 관련 제품이나 상품을 EU 시장에 내놓으면 어떻게 되는가? 비-EU 기반 사업자가 정보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
 - EU 외부에 설립된 자연인 또는 법인이 EU 시장에 관련 제품을 출시할 경우, 해당 제품을 처음으로 EU 시장에 제공하는 EU 내에서 설립된 자가 규정에 따라 사업자로 간주됨.
 - 이 경우 규정에 따라 EU 외부와 내부에 각각 하나씩, 두 명의 사업자가 존재하게 되며, 비-EU 기반 사업자는 유효한 EORI 번호를 가지고 있어야만 정보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세관 신고 전 실사를 수행하고 실사보고서(DDS)를 제출해야함. 비-EU 기반 사업자는 EU 내에서 설립된 공인 대리인이 아닌 정보 시스템에 사업자 역할로 접근할 수 있음.

- ◆ 목재 제품이 산림 전용 및 황폐화를 유발하지 않는지 여부를 평가할 때 고려해야 할 시간 범위는 무엇인가?
 - 2021년 1월 1일 이후의 활동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함.
 - 생산날짜와 생산기간은 소를 제외한 다른 제품은 수확날짜를 의미하며, 생산기간은 생산 과정 기간을 의미함. 목재의 경우 생산 기간은 관련 벌목 작업 기간을 의미함.

- ◆ 목재 수확 작업이 산림전용 및 황폐화를 유발하는 증거가 시간이 지나서야 명확해질 경우, 사업자는 이후 발생하는 사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가?
 - 실사보고서를 제출하기 전 기간에 관련 제품이 수확 활동으로 인해 산림 황폐화가 유발된 지역에서 공급된 경우, 해당 제품은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함. 하지만 실사가 적절하게 수행되어 관련 제품이 시장에 공급되었을 때 규정을 준수한 상태였다면 사업자의 규정 준수 상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

- ◆ 자연 재해가 산림전용으로 간주되는가?
 - 규정에 따르면, 자연 재해로 인해 화재가 발생한 산림이 이후 농경지로 전환되는 경우, 산림전용으로 간주됨. 하지만 산림이 갱신되도록 허용하는 경우, 이는 산림전용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산림이 재생된 이후 목재를 조달할 수 있음.

- ◆ 사업자는 실사 조사에 사용된 문서를 얼마간 보관해야 하는가? 중소기업 사업자는 EU 시장에 출시, 공급 또는 수출하는 관련 제품에 대한 관련 정보를 보관해야 하는가? 이 기간의 시작 시점은 언제로 간주되는가?
 - 사업자는 관련 상품 및 관련 제품을 EU 시장에 출시하거나 수출한 날짜로부터 5년 동안 규정 제9조에 따라 수집한 정보를 증거와 함께 수집, 정리 및 보관해야 함.
 - 중소기업 사업자는 관련 제품을 EU 시장에 공급하거나 수출한 날짜로부터 실사보고서의 참조번호를 포함하여 규정 제5조 3항에 나열된 정보를 최소 5년 동안 보관해야 함.

- ◆ ' 무시할 수 있는 위험 ' 의 기준은 무엇인가?
 - ' 무시할 수 있는 위험'는 것은 특정 제품이 EU 시장에 제공되거나 수출될 때, 제품별 정보와 일반 정보를 충분히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적절한 위험 완화 조치를 적용했을 때, 해당 제품이 제3조(a) 또는 (b) 항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우려사항의 원인이 없음을 의미함.

- ◆ 규정에 적용되는 7개 상품 부문에 대해 사업자가 작성해야 할 실사보고서의 템플릿이 제공되는가?
 - 모든 상품 부문에 적용되는 실사보고서의 템플릿은 동일하며, 규정 부록 II에 명시된 양식을 기반으로 정보 시스템에서 제공

- ◆ 실사를 수행하기 위한 미리 정해진 형식이나 질문 목록이 있는가?
 - 사업자(운영자 및 비중소거래자)는 규정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에 명시된 실사 의무를 준수해야 함. 위험이 존재하지 않거나 또는 무시할 수 있는 위험 상태를 달성하는 것은 관련 제품을 EU 시장에 제공하거나 수출하기 위한 필수 조건임.
 - 실사는 단순한 '체크박스' 방식이 아님. 따라서 구체적인 상황과 공급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규정에 명시된 정밀 조사 단계(정보 수집, 위험 평가, 위험 완화)를 포함해야 함.

◆ EUDR 관련 정보시스템이란 무엇인가?

- 사업자가 규정 요구 사항을 준수하기 위해 제출한 정밀 조사 성명서를 저장하는 IT 시스템으로 이 시스템은 규정 적용 시점까지 운영될 예정이며, 규정 제33조(2)항에 나열된 기능을 사용자에게 제공 될 것임.

◆ 시스템이 역외 생산자들의 지리적 위치를 식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가?

- 시스템은 사업자가 제출한 정밀 조사 성명서를 저장하는 역할을 하며, 지리적 위치 좌표를 식별하는 도구를 제공하지 않음.

◆ 정보 시스템에 지리적 위치 데이터를 업로드하려면 어떤 데이터 형식이 필요한가?

- 사업자는 지리적 위치 데이터를 수동으로 입력하거나 파일로 업로드할 수 있음. 정보 시스템에서 지원하는 파일 형식은 GeoJson이며, WGS-84 좌표 형식(ESPG-4326 투영법)이 현재 지원되고 있음.

◆ 정보 시스템은 언제 준비되는가?

- 정보 시스템은 2024년 12월 중순까지 도입될 예정. 시스템 사용자 등록은 2024년 11월에 시작되며, 2023년 12월부터 2024년 1월까지 시스템 테스트가 실시되었음. 100명 이상의 이해 관계자가 시스템을 테스트했으며, 규칙 적용이 시작되면 시스템이 완전히 작동할 예정임.

◆ 과도기 동안 시장에 제공된 제품을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증거는 무엇인가?

- 과도기 동안 EU 시장에 제공된 제품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관련 문서와 증거가 필요함. 이러한 증거에는 송장, 세관 신고서 및 기타 합법성을 입증하는 공식 문서가 포함될 수 있음.

◆ 과도기 동안 시장에 제공된 제품과 규정을 준수하는 제품을 혼합할 수 있는가?

- 혼합이 가능하지만, 각 배치가 과도기 동안 제공되었거나 규정을 준수함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함. 모든 배치가 과도기 중에 제공되었거나 규정을 준수한다는 증거를 제시해야 함.

Commodities affected by EUDR

Driving Sustainable Change



Oil Palm



Soya



Wood



Cocoa



Coffee



Cattle



Rubber

Higher

EU impact on deforestation

Lower